

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도면 작성 및 활용 지침중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거나 주관적이 고, 모호한 부분은 삭제하여 규정 명확화

2. 주요내용

가. 도면작성 기준 및 기재사항 중 주관적인 부분 삭제(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

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중요 지형지물 및 용도지역 · 용도지구”를 “용도지역 · 용도지구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.

제5조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0. ~ 12. (생략)

9. ~ 11. (현행 제10호부터 제1
2호까지와 같음)